

#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(정신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자매정신요양원 입소자 정원 : 270명
- 사업내용 :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(국비 90%, 시비 10%)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입소자 중 수급권자에게 지원
- 사업위치 : 관내 정신요양시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2021.1.1-12.31 연내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17,444	0	517,444
국고보조금	465,700	0	465,70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51,744	0	51,744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21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06,895	500,347	484,048	471,797	461,915

#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기여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자매정신요양원 입소자 정원 : 270명, 종사자 : 39명
- 사업내용 :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(입소자 관리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 등) 지원 (국비 70%, 구비 30%)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
- 사업위치 : 관내 정신요양시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2021.1.1-12.31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2,406,684	0	2,406,684
	국고보조금	1,684,679	0	1,684,679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722,005	0	722,005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0	0	0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2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 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,243,964	2,260,876	2,289,025	2,361,564	2,450,836

#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회계연도 : 2021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	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	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 
만성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 
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사업비 182,440천원
- 사업내용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 
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(아동청소년, 성인,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,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, 자살예방사업)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(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 
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 
정신장애인 편견 인식 개선 사업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82,440	0	182,44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91,220	0	91,22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45,610	0	45,61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45,610	0	45,61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92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65,849	182,020	312,000	352,600	182,440

#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 
만성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 
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사업비 : 302,400천원
- 사업내용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비 지원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(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 
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 
정신장애인 편견 인식 개선 사업

## 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79,900	0	179,9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89,950	0	89,95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44,975	0	44,975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44,975	0	44,975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6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302,400

#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**□ 사업개요**

- 사업목적 :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 후생 증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 사업비 10,800천원
- 사업내용 : 종사자 가족수당 등 복지 수당 지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(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보건법 제13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 후생 수당 지급

**□ 소요재원**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10,800	0	10,80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10,800	0	10,80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0	0	0
	지방채	0	0	0

**□ 월별배정액**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9,9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0,800	11,400	15,450	19,800	27,900

#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교육, 캠페인, 정신건강 상담, 사례관리,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 사업비: 35,000천원
- 사업내용 :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비 지원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 41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예산편성, 기관 지도 및 감독, 교육, 캠페인, 정신건강 상담, 사례관리, 집단 프로그램 등 추진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	31,785	0	31,785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21,190	0	21,19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10,595	0	10,595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0	0	0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1,785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35,000

#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교육, 캠페인, 집단 프로그램,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사업비 40,720천원
- 사업내용 : 고위험군 사례관리  
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  
캠페인 등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5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(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일반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 
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실시  
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0,540	0	30,54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5,270	0	15,27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5,270	0	15,27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8,324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50,000	50,000	40,720	40,720

#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, 상담,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사업비 51,970천원
- 사업내용 : 아동 청소년 시기별 정신건강 문제 상담  
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실시  
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5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 41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아동 청소년 일반상담 및 위험군 등록관리  
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 
정신건강 홍보 및 캠페인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1,970	0	51,97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25,985	0	25,985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5,985	0	25,985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6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50,000	50,000	50,900	51,970

#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,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사업비 9,000천원
- 사업내용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,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(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
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0,000	0	1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0,000	0	10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4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0,000	10,000	10,000	10,000	9,000

#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(정신건강복지센터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분절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 160,000천원
-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,  
정신건강고위험군 지원,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, 정신건강 인식개선,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,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국비50%, 시비25%, 구비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예산편성  
기관 지도 및 감독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0,000	0	6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40,000	0	40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0,000	0	20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163,200

# 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보건관련 위원회 운영, 정신보건관련 위기개입 활동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총 사업비 7,500 천원
- 사업내용 : 정신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 
정신보건관련 위기개입 활동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 
정신보건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
- 사업위치 : 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2, 사하구 보건소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53, 54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매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8,400	0	8,40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0	0	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8,400	0	8,400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,1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3,500	4,336	4,150

# 통합건강증진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지역주민
- 사업내용 : 임신부 영유아건강관리사업, 아동청소년건강관리사업, 성인건강관리사업, 노인건강관리사업, 구강건강관리사업, 영양플러스 사업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 지역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28,680	0	328,68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64,340	0	164,34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82,170	0	82,17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82,170	0	82,17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80,325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454,404	416,413	355,014	322,428	293,514

#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,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반적 이해, 활용방안 학습 추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기관별 1명  
1인당 교육비 2,94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사업내용 : 정부 정책방향,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반적 이해, 활용방안 학습 추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5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만성질환예방관리 관련 지침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2021년 4월~11월(중앙 및 권역교육 운영)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,940	0	2,94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,470	0	1,47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,470	0	1,47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2,940	2,940

# 모바일 헬스케어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ICT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구민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
-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4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316,000 천원
- 사업규모 : 지역주민 100여명
- 사업내용 : 모바일 기반,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보건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76,400	0	76,4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38,200	0	38,2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9,100	0	19,1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9,100	0	19,10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8,05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29,997

#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○지역사회중심 금연환경조성
  - 법령이행 실태점검,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
  - 지역사회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
  -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
  - 시행주체-사하구
  - 지원형태-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하신중앙로 185 (신평동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9조  
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금연환경 조성 및 조례 지정  
법령이행 실태점검  
금연클리닉 운영 확대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233,090	0	233,09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116,545	0	116,545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58,273	0	58,273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58,272	0	58,272
	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56,989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78,651	338,246	291,165	271,702	166,628

#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, 지역 중심의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기금 50%, 구비 50%
- 사업내용 : - 건강조사 : 사하구민의 건강행태, 만성질환 유병과 삶의 질 등 면접조사 및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혈압) 수행  
- 건강통계 :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 생산 및 통계집 발간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 : 위탁기관 :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- 추진경위 :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
- 추진계획 :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9,542	0	69,542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34,771	0	34,771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34,771	0	34,771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50,3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46,997	45,670	54,148	62,632	69,542

#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증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국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**□ 사업개요**

- 사업목적 :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역사회 주민 건강서비스 제공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구비10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제6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2019.01.01.~2019.12.31.

**□ 소요재원**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	700	0	70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0	0	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700	0	700
	지방채	0	0	0

**□ 월별배정액**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5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1,610	543	303

# 건강도시 조성 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보건의료취약마을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실현, 주민 주도의 건강공동체 형성을 통해 취약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사하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420,000천원(시비 50%, 구비50%)
- 사업내용 : 주민 참여 건강마을 계획 수립  
민관 협력 건강프로그램 운영, 상시 건강상담  
주민 역량강화 교육, 건강리더자 양성  
주민 주도적 취약주민 지역자원 연계, 문제해결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괴정2동, 괴정3동, 신평1동, 장림1동, 감천2동, 구평동, 다대동 등 지역주민
-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, 괴정3동, 신평1동, 장림1동, 감천2동, 구평동, 다대동
- 시행주체 : 부산광역시 사하구
- 추진근거 :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4조
- 추진경위 : 보건의료취약마을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실현을 위해 마을건강센터 운영
- 추진계획 : 마을건강센터 활성화 및 주민조직화 확대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34,000	0	234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17,000	0	117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17,000	0	117,00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4,633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6,298	176,622	255,570	276,044	391,084

#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지표 향상 도모
-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1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90,000 천원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 다대1동 행정복지타운 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(공모사업)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2020년 1~12월 설치 공사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90,000	120,833	210,833
국고보조금	60,000	0	60,00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5,000	65,669	80,669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5,000	55,163	70,163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10,833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1,062,182	220,049

#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건강마을 실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건강생활지원센터 797㎡ (지상 3,4층)
- 사업내용 : 걷기 특화사업, 만성질환 예방관리, 신체활동,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, 주민 건강동아리 운영 등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공모사업 (설치비, 장비비 지원)
- 사업위치 : 다대행정복지타운 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
- 추진경위 : 2019년 공모사업
- 추진계획 : 2021년 1월 개소  
2021년 1~12월 사업 운영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25,000	0	25,00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0	0	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25,000	0	25,000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9,51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0

# 방문건강관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 50%, 시 25%, 구 25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담당제 운영  
대상자 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95,722	0	295,722
국고보조금	147,861	0	147,861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73,931	0	73,931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73,930	0	73,93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05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34,285	57,174	252,733

# 보건소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방문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30%, 구비7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, 지역보건법 제11조,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, 건강관리서비스 제공, 보건소 내외자원 연계등 건강증진서비스 실시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46,200	0	46,20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13,860	0	13,86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32,340	0	32,340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4,423	46,200	39,229	39,230	34,119

#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국가 정책사업
- 사업내용 : 저소득가정에 자녀출산시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파견 및 파견비용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지특70%, 시비15%, 구비15%
- 사업위치 : 보건소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 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- 추진경위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추진계획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
제공기관 관리  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22,300	0	322,3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225,610	0	225,61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48,345	0	48,345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48,345	0	48,345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22,3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15,376	322,300	344,000	497,000	836,286

#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예외지원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둘째아 이상 분만가정의 30%-50%까지 확대 지원
- 사업내용 : 사하구 거주1년 이상 둘째아 이상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구비 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 
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  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- 추진경위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추진계획 :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과 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  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  
제공기관 관리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70,000	0	7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70,000	0	70,00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7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34,000	70,000

#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1인당 최고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)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, 제10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고위험 임신부 임신,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 
(산부인과,소아과 의료기관, 조산원,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및 분만관련 인프라 활용)  
고위험 임신부 신청서 작성 후 의료비 지원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3,400	0	53,4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26,700	0	26,7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3,350	0	13,35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3,350	0	13,35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3,35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8,693	31,380	38,265	34,387	27,888

#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,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4,800천원
- 사업내용 :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,출산 관련 의료비 바우처 지원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회보장정보원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,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, 제11조 및 제28조,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제8조의2, 국민행복카드 통합관리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청소년산모 임신,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 
(산부인과,소아과 의료기관, 조산원,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및 분만관련 인프라 활용)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,600	0	3,6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,800	0	1,8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900	0	9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900	0	90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,6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14,400	7,200	6,960	4,800

#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

회계연도 : 2021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	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	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**□ 사업개요**

- 사업목적 :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약 6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
- 사업내용 : 모자보건사업  
- 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, 임신부 등록관리, 예비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관내 임신부, 영유아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(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 2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 3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**□ 소요재원**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4,000	0	14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7,000	0	7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,500	0	3,5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3,500	0	3,500
지방채	0	0	0

**□ 월별배정액**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7,67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 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11,815	12,873	13,176

#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, 예방접종, 검진(검사) 등 의무기록 유지, 양육에 대한 필수,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국가 정책사업
- 사업내용 : 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배포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보건소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및 동법 제9조(모자보건수첩의 발급)
- 추진경위 : 민간 병의원 및 분유회사 등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정보의 객관성 확보 부족 및 건강기록 단절로 임신부 및 영유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
- 추진계획 : 산전 진찰 보험급여 및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, 예방접종 사업 등과 연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을 통해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도모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,440	0	2,44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,220	0	1,22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610	0	61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610	0	61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,44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2,444	2,440	2,420

#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한 모아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,220천원
- 사업내용 : 각종 자료 제작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 운영물품 등 구입  
 시행주체 : 사하구  
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관내 주민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
- 추진경위 : 모자보건 관련 사업 추진
- 추진계획 : 모자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서식 제작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,220	0	2,22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2,220	0	2,22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904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6,428	16,220	3,800	4,120	1,705

#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,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3,964천원
- 사업내용 : 선천시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
 시행주체 : 사하구  
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- 공통)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(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)  
 - 난청검사비: 외래 검사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  
 - 보청기: 만 3세 미만 청각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양측성 난청 영유아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- 추진경위 : 07~08년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09년부터 전국 단위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실시  
 09년부터 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20% 이하) 대상으로 지원하다가 점차 지원범위 확대 시행  
 18년 10월 난청선별검사 2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기준 변경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
 19년부터 보청기 지원 사업 추가 시행
- 추진계획 : 선천시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  
 난청확진 환아 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수행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23,964	0	23,964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11,982	0	11,982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5,991	0	5,991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5,991	0	5,991
	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5,991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02,096	12,420	11,238	415	1,640

#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36,152천원
- 사업내용 :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질환 특성에 따른 환아 정밀검사비, 의료비,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- 검사비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중 외래 검사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  
- 환아관리: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아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- 추진경위 : 91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검사비 지원,  
97년부터 당해 연도에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대사이상검사 확대 실시,  
2018년 10월부터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  
기준 변경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
201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
- 추진계획 :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 홍보  
대사이상 유소견 대상자 관리 및 사업 안내  
확진 시 보건소 환아 등록 후 만 19세 미만까지 관리 및 지원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36,152	0	36,152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18,076	0	18,076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9,038	0	9,038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9,038	0	9,038
	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2,056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53,549	47,626	31,374	31,001

#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 예방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80,480천원
- 사업내용 : 최고 1인당 1,5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)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
(둘째아 이상 출산 시 소득기준 무관)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- 추진경위 : 99년 모자보건법 개정, 00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
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의료비 차이가 극심함을 감안, 05년부터 체중별 의료비지원 등 실시  
16년 10월 신생아 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 항목 급여화 추진 및 18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 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조정
- 추진계획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 관리 및 지원사업 안내  
미숙아 등 출생신고 접수받고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 
관리방안계획 수립 및 의료비 지원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80,480	0	80,48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40,240	0	40,24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0,120	0	20,12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20,120	0	20,12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0,126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81,429	57,227	40,595	48,849

#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의 임신,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33,800천원
- 사업내용 :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,000원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,000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수급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출산 가구  
\*조제분유: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 질병,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능 또는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대상 등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 
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
- 추진경위 : 대선 공약으로 선정(12.12월), 15.10.30. 사업 시행, 16년 지원단가 인상, 17년 기저귀 지원 사업기간(생후0~24개월)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부자 및 조손가정 대상 조제분유 지원 추가  
18년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(산모 의식불명, 영아 입양가정 등)  
19년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 
20년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확대 지원
- 추진계획 :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
관리계획 수립 후 자격확인 등 수급자 관리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33,800	0	233,800

국고보조금	116,900	0	116,90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58,450	0	58,45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58,450	0	58,45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33,8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64,328	392,360	311,844	233,800	300,016

# 난임시술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국가 정책사업
- 사업내용 :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보건소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
- 추진경위 :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적 책임 요구 증대  
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 필요
- 추진계획 : 지원신청 접수 상담 및 지원대상자 선정, 의료비 지급, 홍보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2,464	0	12,464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6,232	0	6,232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,116	0	3,116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3,116	0	3,116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2,464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562,669	13,713	212,000	304,000

# 한방난임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지방계획 정책사업
- 사업내용 : 난임 판정을 받은 가정에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실시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사업위치 : 부산시한의사회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
  - 추진경위 : 여성친화적인 한방접목 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 국가정책 실현  
확실화된 양의학 난임시술 대안 마련 근거 중심의 사업추진
  - 추진계획 : 한방난임사업 계획 수립 (한의사회)  
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 
사업 참가 한의원 선정 및 교육  
사업 성과대회 개최 등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0,700	0	20,7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0,700	0	20,7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2,179	12,885	14,563	15,145	7,941

# 국가암관리사업(암검진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것을 목적으로 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815,934천원
- 사업내용 : 6대암검진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50% 시비5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11조, 제6조
- 추진경위 :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 실시  
2019년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
- 추진계획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50,880	0	350,88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75,440	0	175,44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75,440	0	175,44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75,44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664,642	340,880	519,000	815,934

# 국가암관리사업(암홍보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,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15,500천원
- 사업내용 : 6대암검진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50%, 시비5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11조, 제6조
- 추진경위 :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 실시  
2019년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
- 추진계획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0,000	0	1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5,000	0	5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5,000	0	5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59,652	7,369	8,973	10,105	15,148

#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(암환자의료비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증대
-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5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3,000,000 천원
- 사업규모 : 580,000천원
- 사업내용 :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
 -소아암  
 -성인(의료수급권자 : 모든암종/건강보험가입자 : 5대암/폐암:건강보험료 적합시)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50%, 시비25%, 구비25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2조, 제13조, 제9조, 제10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증대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00,072	0	600,072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300,036	0	300,036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50,018	0	150,018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50,018	0	150,018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48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441,280	501,440	480,072	600,072	520,000

#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(재가암환자관리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,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,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보건소 등록된 재가암환자에게 식사보조식품, 영양제 등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25% 구비 25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3조, 암관리법 제12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재가암환자 등록관리,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, 영양제 등 물품 제공,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연계 등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6,288	0	16,288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8,144	0	8,144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4,072	0	4,072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4,072	0	4,072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6,288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8,592	14,100	13,000	16,288	19,240

# 암검진 바우처 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의 위, 대장, 유방암 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52,000천원(시비100%) : 암검진비급여비용 검진비지원 50,800천원, 홍보비 2,000천원
- 사업내용 :
  - 위 암 :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(비급여) 50천원 지원
  - 대장암 : 1차검사(분변잠혈검사)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시 수면비용(비급여) 50천원 지원
 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 80천원 지원
    - ▷ 『2018년 국가 암 검진 사업안내』에 따라 유방암 검진 판정기준이“ 유방암의심”, “ 판정유보” 일 경우에 한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10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제5조(보장기관), 암관리법 제3조(국가 등 의무)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-직접 대상자와 유선통화로 사업안내  
-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수검독려 문자전송 및 지역언론 활용을 통한홍보 시행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8,800	0	48,8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48,800	0	48,8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6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30,900	61,000	59,770

# 보건소 암 관리사업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암검진유도 및 암치료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14,750천원
- 사업내용 : 암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사역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50%, 구비50%
-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27번길2 (사하구 보건소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보건위생과-6720(07.3.6)
- 추진경위 : 암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사역
- 추진계획 : 암검진유도 및 암치료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 도모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14,750	0	14,75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7,375	0	7,375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7,375	0	7,375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,3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4,000	14,750	14,750	14,750	14,750

#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고혈압,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675,000천원
- 사업내용 :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 
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3개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,2차 검진 실시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사업위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추진경위 : 검진을 향상을 위한 수검독려 및 홍보 시행
- 추진계획 : -직접 대상자와 유선통화로 수검안내  
-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수검독려 문자전송 및 지역언론 활용을 통한 홍보 시행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7,500	0	67,5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54,000	0	54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3,500	0	13,5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7,5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0,068	55,749	64,213	87,211	67,500

#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국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4,375천원
- 사업내용 : 검진 시기별 영유아 대상 문진 및 진찰, 신체계측, 발달평가 및 상담, 건강교육 및 상담, 구강검진 실시  
 시행주체 : 사하구  
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
- 사업위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 
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
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추진경위 : 07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계획 발표 후 건강보험적용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
 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
 10년 42~48개월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추가  
 12년 66~71개월 건강검진 추가
- 추진계획 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수행  
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홍보 및 대상자 수검 독려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,375	0	4,375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3,500	0	3,5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875	0	875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4,375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5,190	5,460	5,890	4,375

#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1.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
2.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,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10,000천원
- 사업내용 : 1인당 최고 40만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상 '심화평가권고' 해당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50%이하 가구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및 부산 소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(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)
- 추진경위 : 19년부터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의 '심화평가권고'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%이하인 자 대상으로 지원대상 확대
- 추진계획 :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자료(영유아 정밀진단비지원 대상자명단) 확인  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
지원 대상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등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0,000	0	1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8,000	0	8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,000	0	2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1,630	1,630	4,200	9,513

#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사업홍보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1,250 천원
- 사업내용 :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물(품) 제작  
시행주체 : 사하구  
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관내 주민
-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 
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(건강검진) 및 동 시행령 제 24조  
의료급여법 제 14조(건강검진)
- 추진경위 :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
- 추진계획 : 건강검진 홍보물 활용을 통한 사업홍보 및 안내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,250	0	1,25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,000	0	1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50	0	25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,25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1,249	1,250	1,250

# 구강보건실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영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(영유아, 미취학, 초등학교, 임산부, 경로당, 장애인시설 등)
- 사업내용 : 구강상담 및 구강보건교육, 예방처치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구비 100%
- 사업위치 :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
- 추진경위 : -
- 추진계획 : 기간 : 2019.01 ~ 2023.12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,250	0	1,25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,250	0	1,25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6,970	17,845	1,250	1,250	1,125

# 아동(학생) 치과주치의사업

회계연도 : 2021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	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정책사업 : 국민건강증진	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아우식 유병률을 낮추고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초등학교 5학년 학생
- 사업내용 :
  - 구강검진 : 문진, 치면세균막(PHP) 검사, 방사선사진 촬영
  - 구강보건교육 : 구강위생관리, 바른식습관, 불소이용, 금연/절주, 칫솔질/치실질
  - 예방처치 : 전문가 구강위생관리, 불소도포, 치아홈메우기, 치석제거
  - 구강질환 치료(저소득층 아동) : 충전, 신경치료, 발치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 : 관내 치과의원 연계 시술비 지원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 제7조, 학교보건법 제7조,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
- 추진경위 :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이 구강건강증진대상이 됨으로써 사업량 증가
- 추진계획 : 2020. 03 ~ 2020. 11.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2,000	0	32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6,000	0	16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6,000	0	16,00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9,000	29,520	32,000	36,800	5,705

# 노인 의치보철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
  - 만 65세 이상 노인
  - 만 50세 이상 장애인
- 사업내용 : 완전의치(틀니) ·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용 등 지원
- 지원형태 : 자치단체보조
-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 : 관내 치과의원 연계 시술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 제3조, 제6조, 제7조
- 추진경위 :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며,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의 구강 내 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막중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
- 추진계획 : 기간 : 2020. 03. ~ 2020. 11.

## 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0,000	0	6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0,000	0	30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30,000	0	30,00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42,866	37,018	59,456

# 물리치료실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층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물리치료실 인부사역, 물리치료실 의약품 구입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구비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 물리치료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,700	0	3,7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3,700	0	3,70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,5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0,195	20,359	21,935	19,402	18,874

#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희귀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
- 사업내용 :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50%, 시비50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87,840	0	687,84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343,920	0	343,92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43,920	0	343,92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87,84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00,000	1,111,852	647,840	687,840	830,000

# 치매안심센터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제시 및 차질없는 이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치매안심센터 운영  
 운영면적 : 540제곱미터 이상  
 운영인력 : 27명 내외
- 사업내용 : - 치매조기검진, 진단검진, 감별검사 등 검진사업 실시  
 - 치매 어르신 전담 코디네이터를 1: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
 -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, 교육·상담,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  
 -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카페 운영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 80%, 시 10%, 구 1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치매안심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(대통령 공약사항)
-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
- 추진계획 : 2020.3월 신평 제 2청사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02,070	0	502,07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401,656	0	401,656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50,207	0	50,207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50,207	0	50,207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81,354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14,904	106,176	616,062	391,178

# 치매치료관리비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한 의료 형평성 제고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020년 사업비 216,000천원
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자 치매약제비등 본인 부담금 지원  
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지원함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50%
- 사업위치 : 사하구치매안심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 제12조,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
-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- 추진계획 :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
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접수 선정 및 대상자 관리  
예산 집행 점검 및 조정  
치매관리비 예약금 지급 관리업무 등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16,000	0	216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108,000	0	108,00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08,000	0	108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08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00,292	142,200	126,370	183,000	216,000

#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-피후견인 2명, 공공후견인 2명
- 사업내용 : -후견심판 청구  
-공공후견인 교육  
-공공후견인 활동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 80%, 시 10%, 구 10%
- 사업위치 : 사하구치매안심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-민법 제12조(한정후견개시의 심판), 제14조의2(특정후견의 심판)  
-치매관리법 제12조의3
-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- 추진계획 : 공공후견인 및 피 후견자 발굴 확대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,700	0	2,7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2,160	0	2,16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70	0	27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270	0	27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,7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915	2,700

#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**□ 사업개요**

- 사업목적 : 한방치매사업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한방치매 대상자 22명
- 사업내용 :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대상 6개월간 한약, 약침, 침치료를 무료로 지원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시 100%
- 사업위치 : 관내 한방치매예방 지정한의원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건강정책과-1573 (2019.1.23.)
- 추진경위 : -시 사업 추진
- 추진계획 : 대상자 모집 후 지정한의원 인지검사 실시  
 한의원 배정(대상자 의사 고려)  
 한방치매사업(6개월 한약 투약, 주2회 이상 침 치료, 주1회 약침)  
 결과 평가(치료 종결 후 인지검사, 통계 분석, 보고서 제출)

**□ 소요재원**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8,500	0	8,5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8,500	0	8,5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**□ 월별배정액**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7,000	8,000	8,000	14,800	17,600

# 인력운영비(건강증진과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준 향상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96,651천원
- 사업내용 :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방문6, 영양1, 금연1) 인력운영비(수당 등)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  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
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연초 성과계획서 작성  
연중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 
연말 사업 성과 평가

## 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96,651	0	296,651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296,651	0	296,651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48,327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111,450	27,354	229,826

# 인력운영비(통합건강증진사업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190,508	0	190,508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95,254	0	95,254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47,627	0	47,627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47,627	0	47,627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5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327,100	143,674	203,530	225,321

# 인력운영비(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(지원)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지역사회중심 금연환경조성 - 법령이행 실태점검,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  
지역사회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  
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하신중앙로 185(신평동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9조  
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금연환경 조성 및 조례 지정  
법령이행 실태점검  
금연클리닉 운영 확대

## 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75,120	0	75,12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37,560	0	37,56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8,780	0	18,78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8,780	0	18,78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1,26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45,618	66,187	86,996

# 인력운영비(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건강마을 실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지상 3,4층 797㎡
- 사업내용 : 걷기특화사업, 만성질환관리, 신체활동,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, 주민건강동아리 운영 등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공모사업
- 사업위치 : 다대행정복지타운 내 3, 4층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
- 추진경위 : 2019년 공모사업
- 추진계획 : 2021년 1월 개소  
2021년 1~12월 사업 운영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109,230	0	109,230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0	0	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109,230	0	109,230
	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54,615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0

# 인력운영비(방문건강관리)

회계연도 : 2021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	기 능 : 기타 기타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	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**□ 사업개요**

- 사업목적 :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 50%, 시 25%, 구 25%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방문건강관리 지역 담당제 운영

**□ 소요자원**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9,252	0	29,252
국고보조금	14,626	0	14,626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7,313	0	7,313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7,313	0	7,313
지방채	0	0	0

**□ 월별배정액**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284,943	323,431	76,255

# 인력운영비(구강보건사업(인건비)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**□ 사업개요**

- 사업목적 : 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영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(영유아, 미취학, 초등학교, 경로당, 장애인시설 등)
- 사업내용 : 구강보건사업의 상시·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구비 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**□ 소요재원**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16,703	0	16,703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0	0	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16,703	0	16,703
	지방채	0	0	0

**□ 월별배정액**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4,184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23,126	30,680	6,165

# 인력운영비(치매안심센터 운영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인력운영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치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체계 구축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치매안심센터 운영 : 449.97m2 (실버힐링센터 내 2,3층 사용)  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0명
- 사업내용 : 치매상담, 조기검진 및 등록,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, 가족프로그램 운영, 인식개선 및 교육 등 기본 업무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기80%, 시10%, 구10%
- 사업위치 :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50-10, 실버힐링센터 내 2,3층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치매관리법 제3조 (국가 등의 의무)  
『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』 지침 :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-458(2017.10.20.)호
-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- 추진계획 : 2020.3월 신평제2청사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757,930	0	757,93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606,344	0	606,344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75,793	0	75,793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75,793	0	75,793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89,49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241,810	439,666	670,955

# 기본경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건강증진과)

단위사업 : 기본경비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부서운영 경비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, 직원 급량비 등  
부서운영업무추진비  
자산및물품 등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 기간 : 2021.01.~2025.12.

## 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82,824	0	82,824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82,824	0	82,824
지방채	0	0	0

## 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1,758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9,168	19,702	22,544	50,874